

第135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面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3 . 10 . 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0월 1일 · 조기태 의원 외 5인 원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10월 1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3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3. 10. 2)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조 기 태 의원)

가. 개정이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당연직 고문의 위·해촉 내용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현행 수강료의 상한금액 “30,000원”을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함 (별표).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구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당연직 상임 고문”으로 두도록 함 (안 제17조제1항).

○현행 당연직 고문을 동장이 위촉해 오던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 하려는 구의회 의원의 당연직

상임고문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촉 내용을 삭제하여 문맥을 고르게 함(안 제17조제5항).

○현행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그 임기를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고, 조문내용을 알기 쉽고 찾기 편리하도록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제17조의3(임기)으로 조의 제목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일반적으로 당연직이라 함은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일정한 신분을 당연히 유지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현행 당연직 고문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서규정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함(안 제20조제1항 단서규정).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이 재 광 위원회 수정안 동의

6. 修 正 案 의 要 旨

○수정이유

- 안 제17조의3 단서규정 중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1인이 장기간 위원장 직위를 유지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며,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자를 퇴출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못함.

○수정안 본문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함.

제17조의3(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며,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며,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개정안과 같음)
②~④(생략)	②~④(현행과 같음)	②~④(현행과 같음)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⑤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 ----- -----	⑤(개정안과 같음)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인적사항의 공개)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인적사항의 공개) (개정안과 같음)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의3(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의3(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 ----- ----- ----- ----- < 삭 제 >	제20조(해촉) (개정안과 같음)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1.-5.(생 략) ②(생 략) [별표] 사용료 등(제10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1.-5.(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별표] 사용료 등(제10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1.-5.(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별표] 사용료 등(제10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단 위	상한금액	비 고	구 분	단 위	상한금액	비 고	구 분	단 위	상한금액	비 고
수강료	월	30,000원	1인1프로그램	수강료	월	50,000원	1인1프로그램	수강료	월	50,000원	1인1프로그램

7.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조기태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함)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